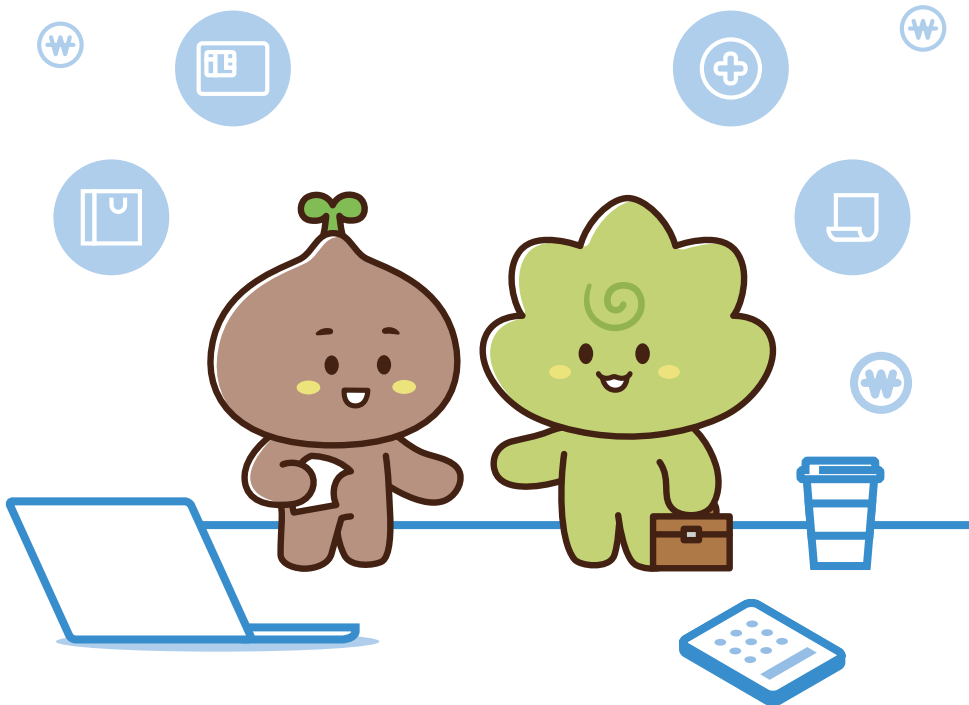


2025년도 세무상담 주요 사례 모음



취약노동자, 세금 안심팁!

서울노동권익센터 세무 상담록



서울노동권익센터

취약노동자, 세금 안심팁!

서울노동권익센터 세무 상담록



발행 : 서울노동권익센터 2026년 4월

원고기획 : 법률지원팀 정현철 세무위원

디자인·편집 : 정보화홍보팀 박지수 홍보위원

일러두기

우리 센터는 2025년도 세무상담건 중 플랫폼·프리랜서, 직장인, 외국인 노동자, 소규모 상공인 등 일하는 서울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거나, 자주 질문하는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자료집으로 묶었습니다. 본 자료집은 노동 관련 세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인 바, 개별적인 사실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나 조치로 금전적 손실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당 센터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련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집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은 세무상담 전용전화(02-6953-4585, 6)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정현철(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 세무위원)

제1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 Q1.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및 기한후신고
- Q2. 근로장려금 신청
- Q3. 외화수입의 원화환산
- Q4.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 산입 방법
- Q5. 수입금액에 플랫폼 중개수수료 포함 여부
- Q6. 미신고 종합소득세의 환급세액 청구
- Q7.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 Q8.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 Q9. 주택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Q10.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 Q11. 원천징수세액 미납부 시 해결방법
- Q12.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 Q13.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Q14.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제2편. 직장인



- Q15.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류수정
- Q16. 퇴직 시 정산세액 오류수정
- Q17. 산후조리원비용의 의료비 공제
- Q18.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수입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 Q19. 일용근로소득과 육아휴직급여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 Q20.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미지급급여 및 퇴직위로금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Q21. 체불 연차수당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Q22. 중도 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Q23. 기타소득의 연말정산 가능 여부
- Q24.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제출방법
- Q25. 월세세액공제 소급 적용
- Q26. 채용 취소 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Q27. 국외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 Q28. 2개 이상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 Q29. 부녀자공제 및 한부모공제
- Q30. 노조선거 기탁금의 노동조합비 공제 여부
- Q3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요건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 Q32.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 Q3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Q34. 연도 중 중견기업으로 변경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방법
- Q35. 월급여로 받는 자사주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Q36. 연도별 환급세액이 차이나는 이유
- Q37. NET방식 근로계약의 법적 문제점
- Q38.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급 적용
- Q39.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판단기준 및 원천징수방법
- Q40. 1세대 2주택에 대한 재산세

제3편. 외국인 노동자



- Q41.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세율 적용 신청
- Q42.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소득 부인 신고(또는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제4편. 소규모 상공인



- Q43.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 Q4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Q45. 대출이자의 경비 인정 요건
- Q46.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 및 요건
- Q47.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방법
- Q48.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후 사업장 이전 시 세액감면 적용방법
- Q49. 임차 주택에 사업자등록 시 문제점
- Q50. 업무용차량 매입비용과 자동차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제 1 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Q1. 세무서로부터 재작년 종합소득세 미신고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미신고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은 기한후신고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때 경비와 공제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는 아직 과세 결정이 내려지기 전 단계이므로,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조금이라도 감소하여 유리합니다. 세무서가 예고한 세액 그대로 과세 결정되는 것보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이 공제항목 추가 적용, 소득세 감면신청, 가산세 감면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때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한후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종합소득세 미신고분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관련 경비(장부작성 신고 시)와 공제항목을 최대한 적용하여 기한후신고 진행
-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보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필요 시 세무사사무실에 장부작성 신고대행 의뢰
 - 장부작성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 중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당 경비지출에 대한 적격 증명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 등 모든 증명자료를 수집
 - 인적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 누락된 공제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영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적용 가능한 소득세 감면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적용

Q2. 18세 이상 자녀가 1명 있는 대리운전업 프리랜서입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들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우선

-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는 분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불가하며, 매년 5월 정기신청 또는 기한후신청을 통해서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자료와 근로장려금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요건에 적합할 경우 장려금 지급
- 5월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기한후신청(2025년 기한후신청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참조)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숫자 [1](정기신청시 해당)과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 발송)에 나오는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전화번호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가능
- 홈택스(또는 손택스) 신청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직접 입력신청에서 진행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므로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 신청 대리(평일 09시~18시)
 - 신청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 자동신청
 -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장려금 신청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됨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주요 신청요건

- 귀하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없는 단독가구이므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총소득기준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인적용역 90%))이 연 2,2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말까지 지급
- 기한후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기한후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Q3. 플랫폼을 통해 미국 법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달러로 용역대가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국 법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달러(USD)로 용역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은 해당 외화에 대하여 은행에서 정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외화 수입금액의 원화 환산 방법

구분	환산 기준일	적용 환율
원칙	외화 입금일(수입 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수입시기 도래 전 환전한 경우	실제 환전일	실제 적용된 매입환율 가능

- 기준환율: 외국환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환율(현찰 매매기준율과는 다름)
- 재정환율: 기준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통화에 대해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환율
- 예 외: 외화 입금 시점과 환전 시점이 가까워 실제 환가액이 명확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계산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실제 실현된 금액으로 신고 허용

Q4.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프리랜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로 할 경우 주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항목들은 무엇인지.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하고자 할 때, 적격 증명자료를 갖춘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에 허용되는 주요경비는 아래의 3가지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 항목

-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 사업에 필요한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 *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대금임

- (외주가공비)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지출하는 대가
- (운송업의 운반비)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하는 대가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임차료로 지출하는 금액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비과세분 포함)
 - 사업소득인 인적용역 대가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실제 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장부작성 신고 필요)

□ 주요경비 증명서류

- 매입비용: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 임차료: 임차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인건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급여 이체내역 등
-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Q5.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플랫폼 중 일부는 중개수수료 차감 후의 금액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해야 하는지,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해야 하는지.

플랫폼별로 원천징수 기준이 총액과 순액으로 나뉘는 것은 세법 해석의 일관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대가로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회계의 총액주의 원칙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용역 제공으로 고객에게서 받은 운행료 총액이 원칙적인 수입금액이 되며, 플랫폼 중개수수료는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된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의 지급명세서가 순액으로 제출되었더라도, 사업소득자 본인에게 모든 플랫폼의 소득을 합산하고 정당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총액주의 원천징수 원칙과 실무적 현실에 대하여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액주의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소득을 지급할 때'의 금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
- 플랫폼 수수료는 원천징수 전에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를 포함하는 총액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플랫폼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함
- 따라서, 순액(플랫폼 수수료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의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플랫폼이 과소 원천징수를 한 것이므로 플랫폼에게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다만, 플랫폼이 '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운송료 전액을 플랫폼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대리운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

□ 실무적 현실

- 비록 플랫폼의 세무 처리에 일관성이 없는 위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플랫폼별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금액을 그대로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국세청 소득자료와 불일치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임의로 순액인 수입금액을 총액으로 고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플랫폼이 제출한 소득자료와 불일치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원칙적으로는 모든 플랫폼이 총액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프리랜서가 사업소득 총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이 세법에 가장 부합함

Q6. 그간 아르바이트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 소득이 적을 경우 3.3%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급세액은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에는 5년 이내 과세연도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은 아래와

□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 신고서 작성
- 소득내역, 경비율 및 공제 항목 등 확인 및 입력
- 입력 완료 시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금액으로 표시
-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 입력
- 신고서 제출
- 서울노동권익센터 방문상담 신청 시, 홈택스 신고화면에 따라 입력방법 안내
- 신고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환급금 입금(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

Q7. 플랫폼을 통해 수강 요청자에게 무용 강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수강자로부터 용역대가를 입금받은 후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하고
실지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일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 무용강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연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

- 수입금액 확인: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총강사료가 수입금액
- 필요경비 및 사업소득금액 계산
 -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경비로 인정됨
 - 플랫폼 수수료도 단순경비율로 산정한 경비에 포함되므로 플랫폼 수수료만 별도로 차감할 수는 없음
 - 수입금액에 예체능 강사 업종의 단순경비율 61.7%를 곱한 금액이 경비가 되고,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 됨
-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모두채움 신고내역 확인 → 신고내역에 이상 없을 경우 모두채움 신고내역
그대로 신고서 제출
 - 모두채움 신고내역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서울노동권익센터 방문상담 신청 시, 홈택스 신고화면에 따라 입력방법 안내

Q8.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데 가능한지.

3.3%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먼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항상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사업
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건에 대해서는 일반과
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일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고 발급일의 익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 시에는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기준이 '직전년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은 변동 없이 '4,800만원 이상'으로 규정(4,800만원 미만일 경우 영수증 발급 의무) 건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매입금액은 제외됨

직전년도 연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비고
4,800만원 미만	발급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납부는 면제되나,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가능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8,000만원 이상	의무	8,000만원 이상

Q9. 프리랜서로 일하는 앱개발 프로그래머입니다. 사업자등록할 때 사업장 주소를 무상임차한 부친 소유 주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프리랜서 앱개발 프로그래머가 부친 소유 주택을 '무상임차'하여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아래의 등록요건과 주의사항을 충족해야 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임차 사업장 주소 등록 요건

- '임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확인서' 또는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국세청 제출
 - 사업장으로 등록할 임차 주택이 실제 사업활동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 앱 개발은 컴퓨터 기반의 비대면 업무이므로 주거지도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실제 사업 수행을 해당 주소에서 하여야 하며 단순 명의만 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주의사항

- 주택이 공동 명의일 경우: 공동 명의자 모두의 동의 필요
- 주택이 임차 주택일 경우: 임대인 동의 없는 사업자등록 제한
-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일 경우: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Q10. 쿼서비스업 프리랜서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디. 전년도까지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세사업자인 쿼서비스업 프리랜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바, 현실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세법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 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건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신고 제외자
 - 부가가치세법 상 신고로 대체되는 경우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를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소규모 영세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 신고 기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 신고서 주요내용: 사업자 인적 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사업장 주소 및 업종코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해당자만)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 적용대상: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 한정
- 가산세율: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
- 적용방식: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Q11. 회사에서 프리랜서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3.3%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3.3%로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본인의 소득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락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회사가 미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결정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세액만큼 납부세액을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조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결방법

-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요청
-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요청
-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홈택스 접속 → 전체 메뉴 →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 서면, 전화 신고도 가능
- 경찰서에 횡령으로 신고
-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법 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 합의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
-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제기
- 원천징수세액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일부이므로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가능
- 지급명세서 미제출한 소득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누락할 경우 미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누락되는 소득이 없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Q12. 영국 언론사에 기사문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영국에서 지급하는 수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언론사에서 받은 사업소득도 국내에서 받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소득 규모 등에 따라 추계신고 또는 장부작성 신고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경비율 추계신고

-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거나 간편하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인적용역 사업자는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가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장부종류	간편장부 작성 신고 가능	간편장부 작성 신고 가능
경비 산정방법	전체 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산정	주요경비: 실제 지출한 경비액 기타경비: 기준경비율로 산정
세금부담	일반적으로 장부 작성신고보다 단순경비율 신고가 유리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 신고보다 장부작성 신고가 유리

- 장부작성 신고
 - 경비 발생이 많은 경우, 장부작성 신고하면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작성 신고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 혜택 가능

구분	간편장부 작성	복식부기 작성
적용대상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대상자	전문직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
기장방식	가계부 형태로 간단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작성
신고방법	홈택스 신고시 간편장부 입력	홈택스 신고시 복식부기 장부 입력 및 재무제표 제출
추계신고 시 가산세	없음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부과

Q13. 외국 회사와 국내 회사 간의 거래에 따라 서류, 물품을 송부하는 심부름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데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심부름 용역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 심부름 대행, 서류 및 물품 송부 등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
 - 국내·외 기업 간 거래에 따른 업무 수행도 포함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사업자등록코너에서 신청
 - 홈택스 접속 → 전체 메뉴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서 진행
 - 업종·심부름 용역은 기타 개인서비스업 또는 서류·물품 운송대행업으로 분류

□ 준비할 서류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개요서(심부름 용역 내용 간단히 작성)
 - 인·허가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별도의 인·허가증 불필
- 유의사항
 - 사업 개시일 기준 20일 이내에 등록
 - 명의대여 금지: 사업자등록한 명의자에게 세금 납부 및 기타 법적 책임 발생 가능

**Q14. 작년에 인적용역 기타소득만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이미 원천징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세액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판단

- 기타소득금액 연간 300만원 초과시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 60%)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서울시 이택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필요
 - 서울노동권익센터 방문상담 신청 시, 홈택스 신고화면에 따라 입력방법 안내

제2편 직장인

Q15.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데도 회사가 감면대상자로 등록하여 원천징수하였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감면대상으로 잘못 등록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 감면 적용 오류에 대한 조치방법

- 회사의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신고
 - 감면으로 인해 적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필요
 - 추가 원천징수세액 납부지연 시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빠른 정정 필요
- 회사가 연말정산 시 정정하거나,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하여 신고 필요
 - 월급여 원천징수 시 소득세 감면으로 과소신고·납부하였더라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여 정정

Q16. 작년에 중도 퇴직하여 이직하였습니다. 퇴직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퇴직 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요청하거나, 근로자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연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감면 적용 오류에 대한 조치방법

- 원천징수 과다 여부 확인
 -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총급여, 공제항목, 기납부세액 등을 검토하여 실제 납부한 세금이 과다했는지 판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이직한 직장예 종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2개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요청하고 정확한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정산
 - 현 직장예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이때 정확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정산
-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서울시 이택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필요
 - 서울노동권익센터 방문상담 신청 시, 홈택스 신고화면에 따라 입력방법 안내
- 환급세액 지급: 환급세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2개월 내에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회사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

Q17. 근로자인데 출산휴가 중입니다. 연말정산 때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시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공제요건

- 공제 대상자: 출산한 산모 본인(배우자나 가족 명의 결제 불가)
- 공제 한도 : 최대 200만원
- 총급여 기준: 누구나 공제 가능(2025년부터 연봉 7천만원 이하 요건 폐지)
- 공제 방식 : 의료비에 포함하여 총급여 3% 초과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 제출 서류

- 이용자 성명, 이용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산후조리원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또는 산모 본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 필요 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Q18.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가지를 재배하여 공판장에 납품하고 받는 수입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 시 취업 금지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해당하는 가지 재배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 중에 자영업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초과 또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법 상 ‘금품’과 소득세법 상 ‘소득’의 의미는 상이합니다. 가지 재배로 얻는 수입이 고용보험법 상으로는 육아휴직 시 금지하는 ‘자영업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금품’의 의미에 관해서는 노동법률상담을 통하여 다시 확인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19.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육아휴직 급여가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작년에 일용근로소득과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종류를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 소득세법 상,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일용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 일용근로소득은 일별로 분리과세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지급명세서 조회방법

-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Q20.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판결문에 미지급급여의 지급과 복직명령이 명시되어 있으나, 회사가 복직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받기로 합의하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부당해고 판결문에 따라 회사는 미지급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필요하고,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에서 원천징수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별 세무처리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 회사의 미지급급여 세무처리

- 근로소득으로 분류
-퇴직 처리 시, 회사가 퇴직 시점까지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하나, 추가 공제 사항이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복직 처리 시, 회사가 미지급급여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진행

□ 회사의 퇴직위로금 세무처리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다음 조건 충족 필요
-복직 판결 이후 일정 기간 근무했거나,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지급된 경우
-퇴직위로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
예)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 또는 성과급 성격의 위로금 지급
-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회사가 복직 불가를 이유로 퇴직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속연수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 처리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위로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급여 또는 퇴직금이 아니고 손해배상적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일반적으로 필요경비 80% 적용)

Q21. 작년에 퇴직하였으나, 체불한 연차수당을 금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이 연차수당을 3.3% 원천징수하고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불리하지 않은지.

작년의 근로 대가로 퇴직 후 받는 체불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3.3% 원천징수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연차수당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대응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3.3%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문제점

-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수당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산정대상 소득에서 누락되어 4대보험료가 과소납부됨

□ 대응방법

-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근로소득이므로 원칙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달라고 회사에 요청
-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될 경우, 근로소득임을 입증하여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가능하고,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홈택스 접속 → 마이홈택스 → 나의 소득 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Q22. 작년 12월에 퇴직한 직장인입니다. 종전 회사에 문의한 결과, 2월에 연말정산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종전 회사는 작년 12월 퇴직자에 대해서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 시 정산내용이 부정확 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자 연말정산 원칙

-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불가
- 퇴직 시에 종전 회사가 정산한 세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정확한 공제사항을 적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 가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준비할 서류
- 종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퇴직 시 회사가 발급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공제 증명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등 공제 사항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공제 시 필요)

-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또는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서울시 이택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진행
 - 서울노동권익센터 방문상담 신청 시, 홈택스 신고화면에 따라 입력방법 안내
- 환급 시기
 - 일반적으로 6~7월 사이에 환급되며,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Q23. 근로자이면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연말정산은 회사가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강사 활동으로 사업소득 과 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할 경우, 세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참고사항들을 추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소득 신고 시 고려할 점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기타소득 연간총액 75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선택 시,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로 과세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종합과세 선택 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적용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

- 8%(지방소득세 제외)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보다 낮은 종합소득세율 6%가 적용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하게 됨
 -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많고 기타소득이 적을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
 -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적고 기타소득이 많거나 경비가 많을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

Q24. 회사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회사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한 자료를 허용하기도 하니, 회사 지침을 확인하여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야 정확한 본인 확인 가능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자료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것인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 필요
 -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 판단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

Q25. 근로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영세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월세세액공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을 못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월세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고,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적용방법

-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시에는 제외)
 - 외국인 거주자도 포함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세액공제율 및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시 제외):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 월세액 한도: 연간 1,000만원
- 소급 적용 여부
 - 연말정산 시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 가능
 - 최대 5년 이내 소급 적용 가능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계약일 것)
 - 월세 이체내역(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용)
 - 소득금액 증빙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Q26. 회사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입사 예정이었으나, 입사 예정일 하루 전에 입사 취소되어 소정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22%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국세청은 채용 취소로 지급하는 금액을 위약금이 아닌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합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 또는 일방적 취소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뜻에서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의 돈은 '사례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례금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기타소득 - 필요경비(0)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 원천징수세액

Q27. 인도네시아에 파견을 나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해외 근로에 대한 비과세급여를 월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고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과세급여는 소득세법 상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이를 제외하지 않고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금액은 월급여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에 월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비과세급여를 제외하고 신고함으로써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급여의 한도와 원천징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와 원천징수방법

- 해외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한도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 원양어선,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 원천징수방법: 비과세급여를 월급여에서 차감한 후 원천징수세율 적용

Q28. 전년도에 3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다니는 회사에 종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전년도에 3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 종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 현재 재직하는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가능)
-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또는 근로소득 신고 →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서울시 이택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진행
 - 서울노동권익센터 방문상담 신청 시, 홈택스 신고화면에 따라 입력방법 안내
- 준비서류
 - 3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사항 증명자료(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 과소신고가산세(10%) +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납부지연일수 × 22/100,000)

Q29.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 경우와 한부모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비교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성의 경우, 부녀자공제 요건과 한부모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부모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적용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녀자공제 적용요건

구분	적용요건
성별	여성
소득 유형	종합소득자(근로자, 인적용역 프리랜서 등)
세대주 요건	세대주일 것
배우자 유무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을 것
소득 기준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3,000만원 이하
추가공제 금액	50만원
중복 여부	한부모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택1)

□ 한부모공제 적용요건

구분	적용요건
성별	남녀 모두 가능
소득 유형	종합소득자(근로자, 인적용역 프리랜서 등)
세대주 요건	세대주일 것
배우자 유무	배우자가 없을 것(한부모)
부양가족 유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을 것
추가공제 금액	100만원
중복 여부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택 1)

Q30. 노동조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조 선거 출마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선거기탁금을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노조 선거 출마를 위한 선거기탁금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비는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조합원이 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에 한정됩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하는 정기적인 조합비
- 공제율: 납부한 조합비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노조 선거기탁금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가능한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에 한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선거기탁금은 특정인의 선거 출마를 위하여 일시적·개별적으로 납부되고, 노동조합의 일반 운영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

Q31.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벤처기업 근로자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상·하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억원(누적 5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 부여
 - 부여시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것
 - 재직요건: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또는 재임 필요
 - 행사가액 요건
 - 신주 발행 시 : 부여일 기준, 시가 또는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신주 발행
 - 자기주식 양도 시: 부여일 기준, 시가 이상으로 자기주식 양도
- 비과세 한도: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누적 5억원까지 가능)
- 신고요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필요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준비사항
 - 주식양·수도 계약서
 - 취득일 및 취득가액 확인
 - 양도가액 확인(최근 6개월 내 동일 주식 거래가 있다면 시가 기준 필요)
 - 동일 기간에 양도한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도 합산하여 기간별 신고
- 신고기간
 - 상·하반기 양도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양도소득 결정세액
- 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 =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Q32. 금년에 결혼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받은 금액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부모님께 받은 금액은 결혼자금이라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결혼을 위하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1억원까지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요건

- 혼인 및 출산 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할 것
 -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할 것
- 증여자 요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을 것
- 증여재산공제 한도
 -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모두 합산하여 총 1.5억원까지 공제
 -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별개로 1억원까지 적용되나,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하여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음
 - 혼인·출산으로 양가에서 증여받을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3억원까지 공제 가능

□ 증여세 신고방법

-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금내역, 예식장 계약서 등

Q33. 작년에 회사에서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근로 소득이 모두 발생한 청년 근로자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연도 중에 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신청하더라도 연간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에 대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신청대상
 - 만15~34세 청년(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기준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해당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 감면내용: 소득세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적용기간: 입사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
- 신청절차
 - 입사 후 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제출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신고대상: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가능)
-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서울시 이택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진행
 - 서울노동권익센터 방문상담 신청 시, 홈택스 신고화면에 따라 입력방법 안내

Q34. 동일 사업장에서 매년 하청회사가 변경되어, 변경된 하청회사에 새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청계약한 회사는 금년 중에 중견기업으로 변경될 예정인데,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후에도 중소기업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연도 중에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이 기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점부터는 중견기업으로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이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을 부연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적용방법부녀자공제 적용요건

- 감면대상 근로소득: 감면의 기산일은 '취업일'이지만, 기업이 연도 중에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중소기업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 불가
- 감면기간
 - 감면기간(청년 5년 등)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기산되지만,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다음 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적용 가능
 -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원천-0376, 2025. 8. 7.)

구분	내용
질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하는 감면적용 기간이 3년이 되는 사업연도 말일(12.31.)인지? 아니면 다음 사업연도 3.31.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Q35.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월급여를 자사주로 지급 받는 경우에 납세조합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외국계 회사에서 급여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급여로 지급 받은 자사주를 양도하여 현금화할 경우에 양도자인 근로자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사주로 월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여세 신고방법

- 외국 법인 국내 사업장에서 급여를 자사주로 지급 받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내에 고용계약이 있고 국내에서 근무 중이라면,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조합에 대한 수수료도 공제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자사주)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준비사항
 - 주식양·수도 계약서
 - 취득일 및 취득가액 확인
 - 양도가액 확인(최근 6개월 내 동일 주식 거래가 있다면 시가 기준 필요)
 - 동일 기간에 양도한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기간별 신고
- 신고 기간
 - 상·하반기 양도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양도소득 결정세액
- 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 =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Q36. 재작년과 작년의 근로소득 규모와 공제금액이 비슷한데도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연말정산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는 소득금액, 공제금액, 기납부세액입니다. 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이 유사한 수준이라면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월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다르면 환급세액이 달라집니다. 작년에 100%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재작년에는 80%로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이 많은 작년의 환급세액이 더 많아집니다. 월급여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급여 원천징수 비율 및 장·단점

원천징수비율	장점	단점
80%	실수령액이 높아져 당장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큼
100%	매월 세액을 적정하게 납부하여 연말정산 부담을 줄임	특별한 장점이거나 단점 없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세액 정산
120%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줄어든 가능성이 큼	매월 실수령액이 적어져 당장의 현금 유동성이 감소함

Q37. NET방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사업주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조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NET방식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납부액을 부담하고 환급세액 발생 시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은 다양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법 위반으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Gross방식(세전 연봉) 근로계약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ET방식 근로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NET방식 근로계약의 법적 문제점

- NET방식 근로계약: NET방식(세후 연봉) 급여 실수령액을 미리 정하고,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 계약의 자유와 세법·근로기준법·회계원칙 상의 문제점
 -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NET방식 근로계약 자체는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세금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분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보험료는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20-0...4,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에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에서도 사업주가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대납한 세금 및 보험료도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NET방식으로 퇴직금 산정 시 임금을 과소 지급하게 되는 문제 발생
 -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총액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회계원칙 상으로도 총액주의가 원칙이므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급여를 기재하고 원천징수한 세액과 보험료를 누락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연말정산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귀속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
 - NET방식 근로계약 시, 사업주가 납부세액을 부담하고 환급세액은 사업주가 환수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이 근로소득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환급세액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법리에 위배

□ 결론

- NET방식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은 계약 방식으로 환급세액의 귀속 문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퇴직금 산정 시 과소지급 문제 등 노동법, 세법, 회계원칙, 사회보험법 상 여러가지 불법적 요소 발생
- 이러한 불법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계약 방식인 Gross방식(세전 연봉)으로 근로계약 체결 필요

Q38.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지금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감면 신청하면 과거 연도분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지.

입사 이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수 년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 요청 가능
 - 경정청구 기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경정청구 방법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경정청구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마친 후, 서울시 이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도 진행

□ 회사에 원천세 신고 경정청구 요청

- 감면 신청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소급하여 원천세 신고를 경정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감면 신청하지 않은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거부할 가능성이 다분

Q39.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일반 근로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 상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 및 상용직 전환 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법 상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판단 및 원천징수방법

구분	일용직	상용직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판단기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건설업은 1년 미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건설업은 1년 이상)
원천징수방법	일 187천원까지 원천징수세액 미발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세금정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분리과세)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의무 (종합과세)

□ 일용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전환에 따른 조치 필요 사항

- 근로자
 -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상용직(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알리고, 정확하게 원천징수해 줄 것을 요청
 - 사업주가 잘못된 신고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 필요 시 4대보험(고용보험 등) 관련 원천징수 사항도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 사업주
 - 3개월 이상 근무일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취소하고, 해당 월부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정정 신고
 - 3개월 이상 근무일(상용직 전환일)이 속하는 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Q40.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1주택이 있는 형제가 본인의 주택으로 전입신고하게 되어, 2명이 모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작년보다 많이 나왔는데 맞는 것인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에 대해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표준세율을 경감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을 제외한 1주택만 소유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형제가 전입신고함으로써 귀하와 형제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에 해당하게 되어 각각 1세대 2주택자로서 세율 경감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의 ‘1세대’의 정의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제3편 외국인 노동자

Q41. 외국인 근로자인데요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세율(19%) 적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관련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 세율 : 19% 단일세율(분리과세)
- 적용기간: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대 20년간
- 선택사항: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단일세율 중 선택 가능

□ 유의사항

-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세법 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은 근로소득 총액에 대해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분리과세되고, 다른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신청방법

- 연말정산 시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

□ 단일세율 적용 여부 판단

- 총급여 약 1억 4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일 경우에 단일세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음
 - 공제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액 비교 후 최종 판단 필요

Q42. 작년 1월, 2월에 아르바이트할 때, 사업주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유학생이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잘못 원천징수한 사항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잘못 원천징수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으로 수정 신고하거나, 근로자(유학생 본인)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수정 절차

- 지급명세서 수정 신고
 -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해당 소득내역을 '0원'으로 정정 신고
 - 취소된 소득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새로 작성하여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신고
 - 국세청에 제출했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소득 종류와 세액 수정
 - 1월분과 2월분 신고서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 내역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원천징수세액도 정정

□ 근로자(유학생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사업주가 소득내역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한 경우,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소득자료를 잘못 제출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수정(또는 취소)하여 제출하는 것
- 사업주가 원천징수내역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 유학생 본인이 지급명세서 허위제출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할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에 대해 사실 여부 조사하여 정정 명령

□ 잘못 제출된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택 1)

- 소득부인신청
 -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홈택스 접속 → 마이홈택스 → 나의 소득 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 '소득부인신청(연간)'에서 진행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근로한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거나, 허위 내역을 제출한 경우
 - 홈택스 접속 → 마이홈택스 → 나의 소득 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에서 진행

제4편 소규모 상공인

Q4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한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일지라도 다른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줄 경우에는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 제공자”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이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이 되는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프리랜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요건

구분	면세 요건	과세 요건
사업장 유무	물적시설 없음	물적시설 있음
인력 고용 유무	근로자 없음	근로자 또는 유사 인력 사용
외주 활용 유무	외주 용역 없음	외주 프리랜서 용역 사용

Q44.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요.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 제출기한

구분	제출 기한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제출방법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 접속 → 전체 메뉴 →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 해당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진행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 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50% 경감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Q45.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어 대출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도 주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한 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대출이자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출이자 등 실제 경비를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출이자 발생액이 많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장부 작성 신고로 전환하시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 작성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할지 잘 판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을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이자의 경비 인정 요건

- 대출의 사업 관련성 입증 : 해당 대출금이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 필요
- 증명자료
- 대출계약서(일반 대출보다 사업자대출이 입증에 유리)
- 금융기관 이자납입증명서
- 대출금을 사업용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한 내역 등

Q46. 조합주택을 분양 받아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고, 임대기간이 총 4년일 경우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합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규정 상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주택은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준공 및 사용승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임대를 시작했더라도, 등기 전이라면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주택조합이므로 상생임대주택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 및 요건

-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상생임대주택 요건
 -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일 것
 -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었을 것
 - 상생임대차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될 것
 - 임대차계약이 주택 소유자 명의로 체결되었을 것

Q4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청년 사업자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청년이 창업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연령, 업종, 최초 창업 등)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주요 요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주요 요건

- 연령(청년)
 -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 한도)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

- 업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 창업(최초 창업)
 - 해당 업종으로 최초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
 - 기존 사업의 확장, 업종 전환,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사업의 양수·인수 등은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창업한 연도가 아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연속적으로 총 5개 과세연도에 적용

□ 청년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세액감면 신청방법

- 신청시기: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화면 내 '세액감면' 해당 항목 작성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를 첨부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예시)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나이 증명)
 - 군복무확인서(병역기간 차감 대상인 경우)

Q48.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다가 수 개월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의 세액 감면율은 50%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의 감면율이 창업 당시의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며, 사업장 이전에 따라 변경되는 감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요

- 감면대상:창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감면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적용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Q49. 인터넷 쇼핑몰에서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임차한 주택으로 할 수 있는지.

인터넷 쇼핑몰(도·소매업)은 주택에서 영위하기 적합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한 주택 주소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 주택에 사업자등록 시 문제점 및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발생
 - 임대인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할 경우,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하여 비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무 및 비용처리 문제
 - 관할 세무서나 담당자에 따라 주택 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대규모 재고 보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전 확인 필요
 -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 공동 경비에 대해서는 주택 전체 면적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사업 경비로 인정되므로, 주택 관련 비용과 사업 경비를 구분하여 처리 필요

Q50. 정보통신업과 애니메이션 용역을 제공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용과 자동차보험료를 경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가액과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경비 인정에는 세법 상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용에 대한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는 경비인정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연간 업무사용경비 전액이 인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사용경비(업무사용비율경비) 인정 한도

- “업무사용경비(업무사용비율경비)”란?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 등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고 하고, 이 중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 100/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초과: 1,500만원/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비 인정 한도
 - 업무용승용차 전부에 대해 “업무사용비율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경비 인정 한도
 - 업무용승용차 1대 : 업무사용비율금액
 - 업무용승용차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0%(2024 ~ 2025년까지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

- 취득가액 전액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고, 5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적용)